

- (2) 연가의 승인권자는 소속 교원이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학교수업 및 교육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승인할 수 있음
- (가)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뺌
- (나)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당해연도에 휴직·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한 연가일수(복무규정 제16조의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 포함)를 보유한 연가 일수에서 차감하되, 이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함
- 결근일수는 '잔여연가일수'(복무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)를 차감한 최종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함
  - 당해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연도의 마지막 근무月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'공무원 보수규정' 제27조 및 제46조,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정산하며,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함

**【사례】** 교육공무원 A의 '19.1.1.에 부여받은 연가는 12일이고, '19.8.1.부터 '20.7.30.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음. 따라서 '19년에는 7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했지만, '19.7.16.부터 12일의 연가를 전부 사용함. 따라서 5일의 결근이 발생하여, '19.7월의 근무일 중 5일을 결근 처리하여야 함

※ 다음 재직기간 연가 복무 상신 시 연가종류에 '연가당겨쓰기'를 선택하고 다음 재직기간 연가 사용임을 사유란에 명시

근무상황신청입력	
근무상황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연가"/>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연가"/>
기간	<input type="text" value="2025-01-21"/> 일 <input type="text" value="08"/> 시 <input type="text" value="50"/> 분부터 <input type="text" value="2025-01-21"/> 일 <input type="text" value="16"/> 시 <input type="text" value="50"/> 분까지
연락처	<input type="text" value="(010)0000-0000"/>
사유	<input type="text" value="다음 재직기간 연가 15일 중 1일 사용"/> <input type="button" value="휴업일"/>
권영기관 신청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신대
비공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기간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유

마) 연가일수의 공제

- (1) 결근일수 · 정직일수 ·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
- (2) 휴직(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①항제5호에 의한 법정의무수행 휴직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),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. 이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,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

$$\frac{\text{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(월)}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해당연도연가일수}$$